

16. 보도침범사고에 대한 법규해설 및 관련판례

▣ 법률관계 및 성립요건

행위주체	자동차의 운전자
행위내용	보도를 침범하거나 부득이 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경우 이에 요구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 의	위반사실만 있으면 충분
인과관계	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보 · 차도 구분된 도로의 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	보 · 차도 구분없는 도로는 제외
피해자적 요건	보도상에서의 보행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운전자적 요건	가. 고의적 과실 나. 의도적 과실 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가. 불가항력적 과실 나. 부득이한 과실 다.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
시설물의 설치 요건	보도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관리 되는 보도	특정 구역 내에 개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시설

차의 운전자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또한 통행구분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이 통고된다.

▣ 보도침범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차도**라 함은 연속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도의 횡단방법

도로 외의 곳에 보도를 출입하는 때에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위로 운행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서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사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길 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하여 통행하는 보행자를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에 대한 처벌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또한 차마는 통행구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통고된다.

▣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관련판례

판결요지	사건번호
사고지역 차도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감속치 않고 일부과속하다가 미끄러져 보도침범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앙보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 1232 판결

시내버스 정차를 위한 진입시, 인도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쓰러질 것을 예상할 주위위무 없다.	대법원 83도 1537 판결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행코져 급정차 조치타가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대기중인 사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2992 판결
야간에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시야장애 되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79고단8829 판결
빙판길 미끄러운 상태에서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차체가 미끄러지며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79고단8776 판결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대법원 75다 1231 판결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는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대법원 72다 1058 판결
인도에 앉아있다가 차에 치인 경우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판결	대법원 67다 1236